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 조합의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II. 검토의견

□ 상임감사 의무선임 조합 기준 완화(안 제27조제8항)

현행 제27조제8항¹⁾ 및 시행령 제14조제5항²⁾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나,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구성원 간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면해주고 있음.

개정안 제27조제8항은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한하여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취지이나, 개정안의 경우 “3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 규정하여, 현행 시행령과 같이 종교단체 등 조합의 성격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즉,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할 때 개정안의 법문 표현상 시행령의 위임

1)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범위가 축소되어, 종교단체 등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의무 면제가 모법에 반하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조합의 특성과 자산규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안 제27조제8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7조(임원) ① ~ ⑦ (생 략) ⑧ <u>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u>두어야 한다</u> .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27조(임원) ① ~ ⑦ (생 략) ⑧ <u>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u> ----- ----- --- <u>두어야 하며</u> , 직전 <u>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u> --- -----.	제27조(임원) ① ~ ⑦ (생 략) ⑧ <u>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u> ----- --- <u>두어야 하고</u> , 직전 <u>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u> --- -----.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 시장상인단체

다.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